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5047 재물손괴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소정(기소), 하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다희(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2. 4. 선고 2024고정43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자물쇠를 설치한 것은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물쇠를 열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자물쇠를 절단한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결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24.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4. 3. 21. 09: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절단기로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2024.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4. 5. 3. 0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절단기로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 부지에 관한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인데 상호 간에 분쟁이 있었던 점, ②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4. 2.경 사무실 부지를 2024. 3. 14.까지 비우기로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잠금장치를 해도



무방하고,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C협동조합의 청산 절차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피해자가 열어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잠금장치를 절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수취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잠금장치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되어 보이는 점, ④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법익과의 비교형량 측면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가벌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 사실과 같이 자물쇠를 절단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해자는 2024. 2. 14.경 피고인과 사이에서 '피고인은 2024. 3. 14.까지 이 사건 사무실 및 차고지를 비우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를 어길 시 잠금장치를 설치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C협동조합 청산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 잠금장치를 열어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6쪽, 증거기록 8, 19, 33쪽),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2024. 3. 21. 및 2024. 5. 3.로 위 확약서에서 약정한 2024. 3. 14. 이후인바, 피해자가 자물쇠를 설치한 것은 위 확약서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두고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부득이하게 자물쇠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문자메시지(공판기록 27쪽)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발생 전인 2024. 2. 22. 피해자에게 자물쇠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자료일 뿐이고 2024. 3. 21.경 및 2024. 5. 3.경 즈음에 연락했다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할 때는 자물쇠를 열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피해자가 자물쇠를 열어준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3쪽), ③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점에 대하여 "지난 3월이었는데, 자물쇠를 끊기 전에 연락하였는데 옷을 갈아입고 온다는 핑계를



대거나 다른 일 핑계로 오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열어달라고 전화하지 않았습시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6쪽), 적어도 2024. 5. 3.자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자물쇠를 절단한 사실을 시인한 점, ④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2024. 3. 21.경 및 2024. 5. 3.경 피고인이 자물쇠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습시다. 있었으면 연락해서 사전 약속해서 제가 당연히 열어줬죠"라고 진술한 점(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의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및 원심 각 일부 법정진술

1. 당심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은정 _____

 판사 김양호 _____

 판사 김성열 _____